

2024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방향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평가실



01

'24년 평가지표 개편방향

02

A. 운영체계 평가 지표 설명

03

B. 업무성과 평가 지표 설명

04

C. 업무성과 평가지표 설명

05

D. 가감점 평가지표 설명



'24년 평가지표 개선방향

01

1. '24년 지표 주요 개선사항
2. '24년 평가방법 및 지표 변경



01

'24년 지표 주요 개선사항

'23년부터 적용되는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동일하게
전 분야 민간재해예방
기관
평가분야를
가감점을 제외하고
「업무충실성」을 별도
분리한
3개 분야로 구분

AS-IS		TO-BE	
평가분야	배점	평가분야	배점
A 운영체계	400점	A 운영체계	200점(-200)
B 업무성과	600점	B 업무 충실성	500점
		C 업무성과	300점
		D 가감점	±100

평가기준 변경

- ▶ 現) 지표별 3~6단계까지 점수구간 상이(비율, 모두적정-미흡-미작성 등)
- ▶ 改) 5단계로 비율 적용 (배점의 0.2~1.0)

02 '24년 세부평가 지표 구성

1 / 2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문항수	배점	비고	
			'23년	'23년		
합 계				1,000		
A 운영 체계	소 계			400		
	A.1 운영방침 및 연간사업계획	1 운영방침 및 연간사업계획	1	30	문서화 적용(1)	
		2 업무관리체계	1	20	문서화 적용(1)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인적기준)	1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	3	90		
		2 직원 교육훈련 실시	6	120	문서화 적용(2)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물적기준)	1 장비의 유지, 관리 적정성	2	40	문서화 적용(1)	
		2 장비활용 실적	1	30		
		3 법정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	1	10		
	A.4 사업장 관리	1 업무 표준의 수립	2	20 (+10~-10)	삭제 및 대체(1) 문서화 적용(1)	
		2 사업장 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관리	1	40	변경(1), 배점강화	
	가 감점 항목	A.5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1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에 대한 포상 실적	1	+10	
			2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개월수별 -15점, 최대 -80점)	1	-80	
			3 최근 2년 이내 사망·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건별 -2점, 최대 -20점)	1	-20	
		A.6 종합화	1 종합기술지원(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	1	+10	

분야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배 점	지표 적용	
				전국단일	지도사
	합 계		1,000	1,000	1,000
A. 운영 체계 (200)	소계		200	200	100
	1.운영관리	① 운영규정·기술지도 매뉴얼 등 수립	50	50	25
		② 보유장바기술자료 활용	50	50	50
	2.인력관리	① 고급인력 보유	50	50	-
		②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등 역량개발 노력	50	50	25

['23년]

A.1 (운영방침)

A.3 (시설, 장비 보유 및
시정)

A.2 (인적자원, 교육..)

A.4~5 (포상, 행정, 종합
화)

['24년]

A.1 (운영관리)

A.2 (인력관리)

D. 1~2 (가점, 별점)

02

'24년 세부평가 지표 구성

2 / 2

소 계			600	
B.1	기술지도의 충실성	1 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8	190
		2 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8	200
		3 보건조치 미이행 사업장 관리	1	50
		4 위험성평가 신청 및 인정률	1	40
		5 수탁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결과(신설)	1	-30
				문항 신설(1)
B.2	재해감소	2.1 업무상 질병 재해를 감소 성과	1	50
		2.2 사업장 기업건강지수 보급률	1	20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3.1 지도사업장 만족도	1	40
		3.2 기술지도 우수사례 발굴노력도	1	10 (+20)
B.4	재해발생 및 산재은폐	4.1 기술지도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건별 -10점, 최대 -100점)	1	-100
		4.2 기술지도 사업장의 산재은폐 (건별 -10점, 최대 -100점)	1	-100
		4.3 기술지도 사업장의 직업병 사례 및 징후 신고 (건별 20점, 최대 100점)	1	+100

B. 업무 총실성 (500)	소계		500	500	600
	1.작업환경 관리	①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유해인자 관리 지도	50	50	75
		② TBM 등 위험성평가 결과 전달 지원	50	50	75
		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50	50	75
		④ 보건조치 미이행 사업장 관리	50	50	75
	2.건강관리	①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	50	50	50
		② 건강강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의사)	50	50	50
		③ 요양 후 업무복귀 시의 업무적합성평가 지도	50	50	50
		④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도	50	50	50
		⑤ 뇌심혈관질환 예방 지도	50	50	50
⑥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		50	50	50	

['23년]

B.1 (보건관련 기술
지도)B.2 (업무상 질병예
방)

['24년]

드맵 및 기
존
보건관련 기술지도 지표 5개 반
영)B.1. ⊖, ⊗ (로드맵 및 중대법
반영)

B.1. ⊙ (기존 지표 동일)

B.2 ⊖~⑥ (기존 지표 동
일)

02

'24년 세부평가 지표 구성

3 / 3

소 계			600	
B.1	기술지도의 충실성	1 지도요원의 사업장 보건관련 기술지도	8	190
		2 업무상질병예방 업무수행	8	200
		3 보건조치 미이행 사업장 관리	1	50
		4 위험성평가 신청 및 인정을	1	40
		5 수탁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결과(신설)	1	-30
B.2	재해감소	2.1 업무상 질병 재해를 감소 성과	1	50
		2.2 사업장 기업건강지수 보급률	1	20
	B.3	3.1 지도사업장 만족도	1	40
		3.2 기술지도 우수사례 발굴노력도	1	10 (+20)
		가 감점 항목		
A.5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1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에 대한 포상 실적	1	+10
		2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개월수별 -15점, 최대 -80점)	1	-80
		3 최근 2년 이내 사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건별 -2점, 최대 -20점)	1	-20
	A.6 종합화	1 종합기술지원(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	1	+10

소 계		300	300	300
C. 업무 성과 (300)	1. 재해감소 등	① 업무상 질병 감소, 작업환경개선 실적 등	200	200
	2. 만족도 등	② 만족도, K2B 시스템 활용	100	100
D. 가감점 (±100)	소 계		±100	±100
	1. 우수사례	① 기술지도 우수사례, 포상	+100	+100
	2. 행정처분	②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100	-100

['23년]

B.2 (재해감소)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A.5~6 (포상 및 행정처분,
종합화)

['24년]

C.1~2 (기존 지표 동일)

D.1~2 (기존 지표 동일)

A. 운영체제 지표 설명 02

A.1 운영관리

A.2 인력관리



A.1 운영관리

< 100점 >

A.1.㉠ 기관 운영규정 기술지도 매뉴얼 등 수립

A.1.㉡ 보유장비 · 기술자료 활용

A.1.⊖

배점
50점
지도사:25
점

운영규정, 기술지도 매뉴얼 등 수립

(1 / 3)

A.1. 운영관리	① 운영규정, 기술지도 매뉴얼 등 수립(50점 / 지도사:25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 안전보건관련 법규 등록 검토대장 예시 〉

구분	안전보건법규	공포일 (시행일)	적용 조직	검토자	검토일
1	산업안전보건법	'21.05.18. ('21.11.19)	본사, 지역본부, 연구원	○○○	'21.06.30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01.27. ('22.01.27)	본사, 지역본부, 연구원	○○○	'21.06.3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2.01.04. ('22.04.05)	본사, 지역본부, 연구원	○○○	'21.06.30
4	도시가스사업법	'22.02.03. ('22.02.03)	본사, 지역본부, 연구원	○○○	'21.06.30

Ⅲ. 법규 등록부 및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법규등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 ⑥ 산안법 관련 제·개정 사항에 대한 법규등록대장

Ⅳ. 조직의 업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⑦ 수행인력의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

Ⅴ. 수행인력의 역량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⑧ 기술자격, 경력, 교육 이수 등의 기록관리 및 활용

Ⅵ. 위탁업무 자체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⑨ 자체 성과평가 계획 및 기준
- ⑩ 평가결과에 따른 한류 활동

평가취지

체계적인
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운영규정 및 지
침의 보유, 실행
여부
평가

※ '반영'과 '실행'이
모두 적합한 경
우

만족한 것으로 평

가

A.1.㉔

배점

50점

보유장비 · 기술자료 활용

(2/3)

평가취지

다양한 장비 활용을 통해 상태 보고서의 수준향상과 장비 활용 적합성 평가

기술자료 제작 및 배포 실적 평가

A.1. 운영관리	② 보유장비 · 기술자료 활용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구분	보유장비(30점)	기술자료(20점)
평가기준에 따른 취득 점수		

<장비활용 실적>

- (장비활용 적정성 인정기준) 다음의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아래의 부적정한 사례(허위작성 등) 적발 시 최저점 부여

- ① 측정 장소(활용 대상이 적정하고 명확할 것, 건강관리장비 생략가능), ② 측정 기준(법정기준을 명확히 제시), ③ 측정값(측정값을 기재) ④ 측정결과(적합 ·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부적합시 개선대책 명시)

※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장비(지시소음계, 조도계 등)만으로 일괄적으로 측정한 경우 한단계 하향

- (평가산식) 분야별 장비활용 실적을 산출한 후 아래의 <표>를 이용한 조합평가

- 작업환경관리장비 평균 활용 실적(회)

$$= \frac{\text{선정된 사업장 작업환경관리장비 활용한 방문횟수}}{5(\text{선정된사업장수})}$$

- 건강관리장비 평균 활용 실적(회)

$$= \frac{\text{선정된사업장 건강관리장비 활용한 방문횟수}}{5(\text{선정된사업장수})}$$

'23년
동일

※ 평가년도 장비 활용 위탁사업장 수 : 측정장비 1종 이상 활용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

A.1.㉔

배점
50점

보유장비 · 기술자료 활용

(3 / 3)

평가취지

다양한 장비 활용을 통해 상태보고서의 수준향상과 장비 활용 적합성 평가

기술자료 제작 및 배포 실적 평가

A.1. 운영관리	② 보유장비 · 기술자료 활용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구분		보유장비(30점) 기술자료(20점)
평가기준에 따른 취득 점수		

【분야별 장비활용 실적 조합표】

작업환경관리장비 건강관리장비	3회 미만	3회 이상	4회 이상
7회 미만	6	12	18
7회 이상	12	18	24
10회 이상	18	24	30

※ 지도사기관의 경우 자격에 따른 분야별 장비 10회이상 18점, 7회이상 12점, 7회미만 6점 부여

【기술자료 제작 및 배포 실적】

자료 제작 및 배포 위탁사업장 활용 비율	3종 미만 제작 및 배포	3종 이상 5종 미만 제작 및 배포	5종 이상 7종 미만 제작 및 배포	7종 이상 제작 및 배포
위탁사업장의 50% 미만 활용	4	8	12	16
위탁사업장의 50% 이상 활용	8	12	16	20

A.2 인력관리

< 100점 >

A.2.㉠ 고급인력 보유

A.2.㉡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등 역량개발 노력

A.2.㉠

배점
50점지도사: 미적
용

고급인력 보유

(1/3)

평가취지

고급인력 확보를
통해 기술지도
수준향상을 유도

A.2. 인력관리 ① 고급인력 보유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고급인력 평가기준]에 따른 인력	

- 국가기술자격증, 면허증, 심사원증, 임금지급대장 등 실질 근무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 추가 인력은 평가대상 기간 중 1/2이상 고용내역이 확인되고 현장 업무 수행여부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평가

□ 평가 기준

보유인력의 기술등급 (최대50점)	점수
① 인력기준 해당자 중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기술사, 산업 전문간호사 자격(면허) 또는 박사 학위 보유 (20점×인원수)	
② KOSHA-MS 및 ISO 45001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자격, 석사 학위 보유 (10점×인원수)	
③ 산안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인력기준 중 제2호 가목 라)에 해당하는 인력이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신 상위자격(산업위생관리기사)을 보유 (10점×인원수)	

※ 배점은 ①~③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되, 중복되는 경우 한가지만 인정

※ 지도사 기관은 평가 제외

A.2.㉔

배점
50점지도사:25
점

위험성평가

평가취지

기술지도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기술등급 향상,
심사원 취득 등
을
유도

- 위험성평가 교육 인정 과정

1) 지정 교육과정

교육기관	과 정 명
공단 및 지정 민간교육기관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16시간)
공단 위탁 민간교육기관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턴트 양성 교육

* 이수시간이 8시간인 교육은 득점 50% 인정 최대 점수는 20점으로 동일

2) 기타 외부교육 : 교육 커리큘럼 중 위험성평가 관련 총 교육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 (단 8시간 이상은 득점 50% 인정 및 온라인 교육은 수강시간의 1/2 적용)

보유인력 * 평가년		총점
①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5점×인원수 (최대25점)	
② 인력기준 해당자 중 근무자가 외부전문화교육, 학회 또는 세미나 등 참석 및 이수 16시간 이상 - [교육, 학회, 세미나, 워크숍] 이수증, 참석증 확인을 통해 시간 산출 ※ 교육, 학회, 세미나, 워크숍 등 인정기준은 세부판단기준 참조 -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하는 경우 교육시간 인정 ※ 동일 행사 내 세미나 참석은 1회로 한정하여 교육시간에 산입	- 법정 인력 합계 비율에 따라 · 100% : 20점 · 80%이상 : 15점 · 60%이상 : 10점 · 40%미만 : 5점 · 없는 경우 : 0점	
③ 인력기준 해당자 중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전문간호사,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 학위 취득, 심사원 취득	15점×인원수	
④ 인력기준 해당자 중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및 기술사 1차 시험 합격, KOSHA-MS 및 ISO 45001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보) 취득, 석사 학위 취득	10점×인원수	
⑤ 인력기준 해당자 중 안전보건 관리종목* 국가기술자격 취득 * 산업위생, 인간공학, 산업안전, 건설안전, 가스, 소방설비화재감식 평가, 방재, 화공 등	10점×인원수	

※ 배점은 ①~⑤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B. 업무신뢰도 지표

03

설명

B.1 작업환경 관리

B.2 건강관리



B.1 작업환경 관리

< 200점 >

B.1.⊖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유해인자 관리
지도

B.1.⊖ TBM 등 위험성평가 결과 전달 지도

B.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B.1.④ 보건조치 미이행 사업장 관리

B.1.㉠

배점
50점지도사:75
점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유해인자 관리 지도

평가취지

위험성평가 적용
및 확산유해인자 등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 지도
적정성 평가

B.1. 작업환경관리 ①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유해인자 관리 지도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도가 모두 적정한 경우	☐ 1.0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도가 80% 이상 적정한 경우	☐ 0.8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도가 60% 이상 적정한 경우	☐ 0.6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도가 40% 이상 적정한 경우	☐ 0.4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도가 40% 미만 적정한 경우	☐ 0.2

□ 평가방법

- 평가자는 작업환경 고위험 사업장 또는 유해인자별 고위험 업종 중 5개소를 무작위 선정
 - 작업환경 고위험 사업장 : 예)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또는 초과가능 사업장 등
 - 유해인자별 고위험 업종 : 예) 이상기압의 경우 잠수작업 보유 발전업, 혈액매개 감염의 경우 병원, 방사선 물질의 경우 비파괴 검사작업 보유 업종 등
- 판단 기준에 따라 사업장관리카드와 보고서 내용의 적정 항목 비율에 따라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 평가산식

$$\text{적정률(\%)} = \frac{\text{적정 항목 개수}}{\text{필수항목 중 해당항목 개수}} \times 100$$

B.1.㉔

배점
50점지도사:75
점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유해인자 관리 지도

평가취지

위험성평가 적용
및 확산유해인자 등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 지도
적정성 평가

B.1. 작업환경관리 ①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유해인자 관리 지도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도가 모두 적정한 경우	☐ 1.0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도가 80% 이상 적정한 경우	☐ 0.8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도가 60% 이상 적정한 경우	☐ 0.6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도가 40% 이상 적정한 경우	☐ 0.4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도가 40% 미만 적정한 경우	☐ 0.2

□ 평가산식

$$\text{적정률(\%)} = \frac{\text{적정 항목 개수}}{\text{필수항목 중 해당항목 개수}} \times 100$$

□ 판단 기준

○ 필수항목은 다음의 7가지 항목 적용

신설

구분	필수항목	해당여부	적정여부
	합 계		
1	위험성평가지도유해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등의 적정성		
2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 기술지도의 적정성	B.1.2.1	
3	작업환경관리 기술지도의 적정성	B.1.1.6	
4	보호구 관련 기술지도의 적정성	B.1.1.5	
5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제도 이행 기술지도의 적정성	B.1.1.2	
6	기타 보건관련 법적 사항 지도·조언의 적정	B.1.2.7~	
7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도	B.1.2.6	

○ 현장 평가결과(2개소)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도 수행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1개소당 두단계 하향

B.1.㉔

배점
50점지도사:75
점

TBM 등 위험성평가 결과 전달 지도

평가취지

위험성평가 실시 및
이행에 대한 실질
반영여부 확인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
과 공유·인지, 참
여여부 중점 평가

B.1. 작업환경관리 ② TBM 등 위험성평가 결과 전달 지도(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적정 지도율이 90% 이상인 경우	☐ 1.0
적정 지도율이 80% 이상 ~ 90% 미만인 경우	☐ 0.8
적정 지도율이 70% 이상 ~ 80% 미만인 경우	☐ 0.6
적정 지도율이 60% 이상 ~ 70% 미만인 경우	☐ 0.4
적정 지도율이 60% 미만인 경우	☐ 0.2

□ 평가 방법

- 평가년도 위탁사업장 중 5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장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평가
- 방문사업장 현장확인 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면담 실시(TBM 등 실행여부, 위험성평가 결과 전달 등)를 통해 반영 여부 평가

□ 평가 기준

- 평가 산식

$$\text{노력도} = \frac{\text{적정 항목수 (지도결과)}}{\text{샘플링사업장 수} \times \text{확인사항 수(3가지)}} \times 100$$

구분	확인 사항	지도여부	면담결과
TBM 등 실시여부	작업전 안전점검 회의 실시 여부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공유		
보건수칙 지도	중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및 근로자 인지		

- 지도여부 : 3개 항목별 각각의 내용을 만족하는 경우 "○", 그렇지 않으면 "X"로 평가
- 면담결과 : 현장확인 시 근로자 면담을 통해 적정한 경우 "○", 그렇지 않으면 "X"로 평가하되, "X"로 평가되는 경우 1개소 당 한 단계씩 하향 평가

B.1.⑧

배점
50점지도사:75
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평가취지

위탁사업장의 안전
보건체계구축을 위
한
지도 노력을 평가

B.1. 작업환경관리	⑧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50점)
평가기준	
총점 (배점×평가결과)	
노력도가 80% 이상인 경우	☐ 1.0
노력도가 70% 이상 ~ 80% 미만인 경우	☐ 0.8
노력도가 60% 이상 ~ 70% 미만인 경우	☐ 0.6
노력도가 50% 이상 ~ 60% 미만인 경우	☐ 0.4
노력도가 50% 미만인 경우	☐ 0.2

□ 평가 방법

- 평가년도 위탁사업장 중 5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장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평가
- 기술지도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 기술지도 보고서 작성 내용 중 적정한 항목 수를 평가
 -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가 현장에 미 게시된 경우에는 최저 평가

□ 평가 기준

○ 평가 산식

$$\text{노력도}(\%) = \frac{\text{적정 지도 건수}}{\text{샘플링 개소} \times \text{필수항목 개수}} \times 100$$

-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세부판단기준>에 따라 지도 및 재지도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 "지도" 및 "재지도"가 적정한 경우 해당 항목 **적정**으로 평가

- 현장 평가결과(2개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1개소당 **한단계** 하향

B.1.⑥

배점
50점지도사:75
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평가취지

위탁사업장의 안전
보건체계구축을 위
한
지도 노력을 평가

B.1. 작업현

노력도가 8
노력도가 7
노력도가 6
노력도가 5
노력도가 5

②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위탁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 업무수행 내용 및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개선의견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포함할 수 있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

확인 사항	지도여부	재지도여부
① 상태보고서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자필 서명하고 지도사항은 개선결과로 보고됨		
② 기술지도 담당자는 관리감독자(부서장)로 지정되어 있고 성실히 역할을 수행함	2호, 5호, 6호 (전담조직)	
③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안전보건방침·목표가 게시됨	1호	
④ 사업장 구성원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해하고 실천에 노력함	7호 (종사자의견청취)	
⑤ 위험성평가는 현장 근로자가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선하고 있음	3호 (위험성평가)	
⑥ 근로자가 현장의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한 작업방법을 알고 있음		
⑦ 매년 안전활동실적은 경영책임자가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4호 (예산)	

B.1. ④

배점
50점지도사:75
점

보건조치 미이행 사업장 관리

평가취지

위탁사업장의 산업
보건
기초제도가 현장에
서
적절하게 이행되는
지를
평가

※ 기준지표

B.1.3

B.1. 작업환경관리

④ 보건조치 미이행 사업장 관리 (배점: 50)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위탁사업장의 3% 미만인 경우	☐ 1.0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위탁사업장의 6% 미만인 경우	☐ 0.8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위탁사업장의 9% 미만인 경우	☐ 0.6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위탁사업장의 12% 미만인 경우	☐ 0.4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위탁사업장의 12% 이상인 경우	☐ 0.2

□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간 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업건강분야 조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위탁사업장에 대한 비율로 평가
 - 전체 위탁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업건강분야 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보건기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의 점유율로 평가

□ 평가산식

- 점유율(%) = (과태료 부과 사업장수 ÷ 전체 위탁 사업장수) × 100

□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의 직업건강분야 과태료 처분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B.2 건강관리

< 300점 >

B.2.㉠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

B.2.㉡ 건강장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의사)

B.2.㉢ 요양 후 업무복귀 시의 업무적합성평가 지도
(의사)

B.2.④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도

B.2.⑤ 뇌심혈관질환 예방 지도

B.2.⑥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

B.2.㉔

배점
50점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

- 평가산식에 따라 산출된 실시비율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사후지도 대상 및 실시 근로자수에 대해 파악된 내용이 없는 경우 "부적정"으로 평가
- 관리 사업장 5개소에 대한 적정성 확인 결과, 다음의 기준을 적용
 - 4개소 적정 : 한단계 하향, 3개소 적정 : 두단계 하향, 2개소 적정 : 세단계 하향, 1개소 이하 적정 : 네단계 하향
- 현장 평가결과(2개소) 사후지도 실시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1개소당 두단계 하향

과 사후지도(50점)	
	평가결과
1))	
실시한 경우	☐ 1.0
실시한 경우	☐ 0.8
실시한 경우	☐ 0.6
실시한 경우	☐ 0.4
실시한 경우	☐ 0.2

구축 전까지
기존방식 유지

관리를 유도하기 위
해
의사 및 간호사 직
무 중
건강진단결과에 대
한
사후지도 실시여부
평가

□ 평가방법

- 기관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건강진단결과 사후지도 실시현황에 대한 DB 제시
- 평가자는 관리사업장 중 5개소를 무작위 선정
 - (사후지도대상) 위탁사업장의 건강진단결과 질병 유소견자(D_1, D_2, D_N) 및 직업병 요관찰자(C_1)
 - (사후지도내용) 작업배치, 작업전환 또는 근로시간 단축, 상담 및 요양지도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실시 여부 평가

□ 판단 기준

○ 평가 산식

$$\text{실시율(\%)} = \frac{\text{건강진단결과 사후지도 실시 근로자수}^*}{\text{사후지도 대상 근로자수}} \times 100$$

* 연간 1회 이상 사후지도를 실시한 근로자수

B.2.㉔

배점
50점

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의사)

평가취지

산업보건직의 직무
중
건강장애 원인조사
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실시여부 평가

※ 기존지표
B.1.1.3
(30점 → 50점)

B.2. 건강관리	② 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의사) (50점)
평가기준	
총점 (배점×평가결과)	
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를 80% 이상 실시한 경우	☐ 1.0
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를 60% 이상 실시한 경우	☐ 0.8
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를 40% 이상 실시한 경우	☐ 0.6
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를 20% 이상 실시한 경우	☐ 0.4
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를 20% 미만 실시한 경우	☐ 0.2

□ 평가대상

- 평가대상기간 내 업무상질병자 발생, 질병 유소견자(D1)를 대상으로 평가 (단, 소음성난청, 진폐, 질병 유소견자(DN), 일반질병 유소견자(D2)는 제외)

□ 판단 기준

- 평가 산식

$$\text{실시율(\%)} = \frac{\text{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실시 근로자수}}{\text{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대상 근로자수}} \times 100$$

- 평가산식에 따라 산출된 실시비율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대상사업장이 없는 경우 "만점" 부여

- 관리 사업장 5개소에 대한 적정성 확인 결과, 다음의 기준을 적용

- 4개소 적정 : 한단계 하향, 3개소 적정 : 두단계 하향, 2개소 적정 : 세단계 하향, 1개소 이하 적정 : 네단계 하향

- 현장 평가결과(2개소) 건강장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실시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1개소당 두단계 하향

- "지도의 적정성"과 "재확인 지도의 적정성"이 모두 "양호"한 경우 적정한 것으로 평가

B.2. ※

배점
50점

요양후 업무복귀 시의 업무적합성평가 지도(의사)

평가취지

체계적인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직의 직무 중 업무적합성평가 지도·조언 여부 평가

※ 기준지표
B.1.1.1
(30점 → 50점)

B.2. 건강관리	③ 요양후 업무복귀 시의 업무적합성 평가 지도(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업무적합성평가 지도를 80% 이상 수행한 경우	☐ 1.0
업무적합성평가 지도를 60% 이상 수행한 경우	☐ 0.8
업무적합성평가 지도를 40% 이상 수행한 경우	☐ 0.6
업무적합성평가 지도를 20% 이상 수행한 경우	☐ 0.4
업무적합성평가 지도를 20% 미만 수행한 경우	☐ 0.2

□ 평가대상

- 산업재해로 요양 후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

□ 판단 기준

- 평가 산식

$$\text{실시율(\%)} = \frac{\text{업무적합성평가 지도·조언 수행 근로자수}}{\text{업무적합성평가 대상 근로자수}} \times 100$$

- 평가산식에 따라 산출된 실시비율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관리 사업장 5개소에 대한 적정성 확인 결과, 다음의 기준을 적용

※ 업무적합성 평가지도의 적정성 : 업무적합성 평가대상자 파악, 업무적합성 평가 내용 이행 지도 및 확인, 재지도 내용이 적정한 경우 "적정"으로 평가
- 4개소 적정 : 한단계 하향, 3개소 적정 : 두단계 하향, 2개소 적정 : 세단계 하향, 1개소 이하 적정 : 네단계 하향

- 현장 평가결과(2개소) 업무적합성평가 수행 실시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1개소당 두단계 하향

대상 없는 경우,
"만점" 부여 [변경]

B.2. ④

배점
50점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

평가취지

근골격계부담작업
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활동의 실행력 제고
를 위해 근골격계질
환
예방지도의 적정성
평가

B.2. 건강관리	④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 (50점)
평가기준	
총점 (배점×평가결과)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가 모두 적정한 경우	☐ 1.0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가 80% 이상 적정한 경우	☐ 0.8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가 60% 이상 적정한 경우	☐ 0.6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가 40% 이상 적정한 경우	☐ 0.4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가 40% 미만 적정한 경우	☐ 0.2

□ 평가방법

- 기관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 사업장 및 유해요인조사 실시 현황에 대한 DB 제시
- 평가자는 관리사업장 중 5개소를 무작위 선정하고,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사업장 선정이 어려울 경우 근골격계질환 고위험업종* 중 선정
 -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서비스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여부, 수시 또는 정기 유해요인조사 지도,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무리한 힘·부자연스런자세·반복동작의 감소방법 제시 등 "지도의 적정성"과 "재확인 지도의 적정성"을 평가

※ 기준지표
B.1.2.2
(20점 → 50점)

B.2.④

배점
50점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

평가취지

근골격계부담작업
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활동의 실행력 제고
를 위해 근골격계질
환
예방지도의 적정성
평가

※ 기존지표
B.1.2.2
(20점 → 50점)

B.2. 건강관리	④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 (50점)
평가기준	
총점 (배점×평가결과)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가 모두 적정한 경우	☐ 1.0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가 80% 이상 적정한 경우	☐ 0.8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가 60% 이상 적정한 경우	☐ 0.6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가 40% 이상 적정한 경우	☐ 0.4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가 40% 미만 적정한 경우	☐ 0.2

□ 판단 기준

○ 평가 산식

- $\text{적정률}(\%) = (\text{적정 사업장수} \div \text{선정 사업장수}) \times 100$

○ "지도의 적정성"과 "재확인 지도의 적정성"이 모두 "양호"한 경우 적정한 것으로 평가

- 지도의 적정성 :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여부, 수시 또는 정기 유해요인조사 지도 및 실시여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바른자세, 스트레칭, 체조, 반복동작 감소방법 제시, 중량물 제한, 유해성주지 등 지도내용이 문서로 확인되는 경우 "양호"로 평가
- 재확인 지도의 적정성 : 평가기간 내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 내용에 대해 사업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재지도 하는 경우 "양호"로 평가

○ 현장 평가결과(2개소)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 수행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1개소당 두단계 하향

B.2. ⑤

배점
50점

뇌심혈관질환 예방 지도

평가취지

뇌심혈관질환 발병
고위험군 파악 및
사후지도 등 뇌심혈
관

예방지도의
적정성 평가

※ 기존지표
B.1.2.5
(20점 → 50점)

B.2. 건강관리	⑤ 뇌심혈관질환 예방 지도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가 모두 적정한 경우	☐ 1.0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가 80% 이상 적정한 경우	☐ 0.8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가 60% 이상 적정한 경우	☐ 0.6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가 40% 이상 적정한 경우	☐ 0.4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가 40% 미만 적정한 경우	☐ 0.2

□ 평가방법

- 기관에서는 건강진단 결과 고혈압, 당뇨병 D_2 , 또는 D_N 판정자 현황에 대한 DB 제시
- 평가자는 고혈압, 당뇨병 등에 의한 유소견자(D_2) 또는 D_N 보유사업장 중 5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
 - (사후지도대상) 고혈압, 당뇨병 기저질환자이거나, D_2 또는 D_N 판정받은 근로자
 - (평가내용방법) 사후지도대상 및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지도 실시내용의 적정성 평가

B.2. ⑤

배점
50점

뇌심혈관질환 예방 지도

평가취지

뇌심혈관질환 발병
고위험군 파악 및
사후지도 등 뇌심혈
관

예방지도의
적정성 평가

※ 기존지표
B.1.2.5
(20점 → 50점)

B.2. 건강관리	⑤ 뇌심혈관질환 예방 지도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가 모두 적절한 경우	☐ 1.0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가 80% 이상 적절한 경우	☐ 0.8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가 60% 이상 적절한 경우	☐ 0.6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가 40% 이상 적절한 경우	☐ 0.4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가 40% 미만 적절한 경우	☐ 0.2

□ 판단 기준

○ 평가 산식

- 실시율(%) = (사후지도 실시 근로자수 ÷ 사후지도 대상 근로자수) × 100

○ 관리 사업장 5개소에 대한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 적정성 확인 결과, 다음의 기준을 적용

※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의 적정성 : 뇌심혈관질환 발병 고위험군 파악, 고위험군에 대해 면담을 통한 사후지도 실시 및 확인 재지도 내용이 적절한 경우 "적정"으로 평가

- 4개소 적정 : 한단계 하향, 3개소 적정 : 두단계 하향, 2개소 적정 : 세단계 하향, 1개소 이하 적정 : 네단계 하향

○ 현장 평가결과(2개소)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 수행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1개소당 두단계 하향

B.2. ⑥

배점
50점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

평가취지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과 업무상 정신 질환 예방을 위해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사업장(군)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의 적정성 평가

※ 기존지표
B.1.2.4
(30점 → 50점)

B.2. 건강관리		⑥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가 모두 적정한 경우		☐	1.0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가 80% 이상 적정한 경우		☐	0.8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가 60% 이상 적정한 경우		☐	0.6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가 40% 이상 적정한 경우		☐	0.4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가 40% 미만 적정한 경우		☐	0.2

□ 평가방법

- 기관에서는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 현황에 대한 DB 제시
- 평가자는 관리사업장 중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5개소를 선정

* 우선선정기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질병 발생 사업장, 감정노동 종사 직종 보유 사업장 등

- 감정노동평가(직장내 괴롭힘 포함),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작업전환, 휴식시간 배분, 상담 치료, 건강증진프로그램 시행 등 지도내용의 적정성 확인

B.2. ⑥

배점
50점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

평가취지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과 업무상 정신
질환 예방을 위해
직무스트레스 고위
험 사업장(군)을 대
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의 적정성 평가

※ 기존지표
B.1.2.4
(30점 → 50점)

B.2. 건강관리		⑥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가 모두 적절한 경우		☐	1.0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가 80% 이상 적절한 경우		☐	0.8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가 60% 이상 적절한 경우		☐	0.6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가 40% 이상 적절한 경우		☐	0.4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가 40% 미만 적절한 경우		☐	0.2

□ 판단 기준

○ 평가 산식

- 실시율(%) = (직무스트레스 지도 근로자수 ÷ 고위험 근로자수) × 100

○ 관리 사업장 5개소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 적정성 확인 결과, 다음의 기준을 적용

※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의 적정성 :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 파악, 고위험군에 대해 면담을 통한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 및 확인재지도 내용이 적절한 경우 "적정"으로 평가

- 4개소 적정 : 한단계 하향, 3개소 적정 : 두단계 하향, 2개소 적정 : 세단계 하향,
1개소 이하 적정 : 네단계 하향

○ 현장 평가결과(2개소)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 수행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적절한 경우
1개소당 두단계 하향

C. 업무성과 지표 설명 04

C.1 재해감소 등

C.2 만족도 등



C.1 재해감소 등

< 200점 >

C.1.㉠ 업무상질병 감소, 작업환경개선 실적
등

C.1.㉠ 만족도, K2B 시스템 활용

C.1.㊸

배점
200점

업무상 질병 감소, 작업환경개선 실적 등

(1 / 3)

평가취지

위탁사업장의
업무상질병
감소 수준 평가※ 기존지표
B.2.1
(50점 → 100점)

C.1. 재해감소 등	① 업무상질병 감소, 작업환경개선 실적 등 (배점: 200)	
평가기준	배점	평가결과
총점	200	
① 업무상질병 만인율 감소 성과	100	
② 보건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	50	
③ 작업환경개선 실적	50	

□ 평가방법

- 공단에서 산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위탁사업장의 업무상질병 감소 수준 평가
- 대상 : 평가대상 기간 3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한 보건관리 위탁사업장(50인 미만 제외)

□ 평가 산식

$$\text{감소율} = \frac{\text{평가대상기간 업무상질병 만인율} - (A)}{\text{평가대상기간 전 3년간 업무상질병 만인율 가중평균}(A)} \times 100$$

* A: 가중평균 연도별 비중(전년:전전년:전전전년 = 0.5:0.3:0.2)

* 공식통계(산재승인일 기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반올림

업무상질병 만인율 감소성과 평가 기준

- ① 기준통계 : 정부 공식통계를 활용하되 공식통계 발표 이전에는 잠정통계 활용
- ② 산입대상 : 업무상질병(진폐, 소음성난청 등 만성질환 제외), 밀폐공간 질식재해
- ③ 사망자 가중치 : 이환자(부상자)의 10배(사망 1명 = 이환자 10명)

C.1.⊖

배점
200점

업무상 질병 감소, 작업환경개선 실적 등

(2 / 3)

평가취지

사업장에서 보건관련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7가지 보건관련 프로그램의 실질적 시행 여부 평가

※ 기존지표
B.1.2.2~3, 6~8
(20~30점 → 50점)

C.1. 재해감소 등	① 업무상질병 감소, 작업환경개선 실적 등 (배점: 200)	
평가기준	배점	평가결과
총점	200	
① 업무상질병 <u>만인율</u> 감소 성과	100	
② 보건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	50	
③ 작업환경개선 실적	50	

□ 평가기준

○ 평가산식에 따라 산출된 실시비율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1> 기준(배점: 30점)	평가결과	<평가2> 기준(배점: 20점)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적정 시행율이 100%인 경우	☐ 1.0	적정 시행율이 80%인 경우	☐ 1.0
적정 시행율이 80%이상인 경우	☐ 0.8	적정 시행율이 60%이상인 경우	☐ 0.8
적정 시행율이 60%이상인 경우	☐ 0.6	적정 시행율이 40%이상인 경우	☐ 0.6
적정 시행율이 40%이상인 경우	☐ 0.4	적정 시행율이 20%이상인 경우	☐ 0.4
적정 시행율이 40%미만인 경우	☐ 0.2	적정 시행율이 20%미만인 경우	☐ 0.2

○ <평가1> : 프로그램 운영·시행 대상을 파악하고, 자체 지침 또는 KOSHA GUIDE에 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시행하는 경우 “적정”으로 평가

※ 법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DB에서 누락하고 있는 경우 한단계 하향

○ <평가2> 건강증진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평가하고, 자체 지침 또는 KOSHA GUIDE에 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시행하는 경우 “적정”으로 평가

※ ⑤의 경우 “기업건강증진건강지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한단계 상향

C.1.⊖

배점
200점

업무상 질병 감소, 작업환경개선 실적 등

(3 / 3)

평가취지

위탁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유도하
여 업무상질병 예
방효과 거양

※ 기존지표
B.1.1.6
(40점 → 50점)

C.1. 재해감소 등	① 업무상질병 감소, 작업환경개선 실적 등 (배점: 200)	
평가기준	배점	평가결과
총점	200	
① 업무상질병 <u>만인율</u> 감소 성과	100	
② 보건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	50	
③ <u>작업환경개선 실적</u>	50	

□ 판단 기준

- 유해요인을 제거한 작업환경개선 실적 인정기준)
 - 화학적인자(분진 포함)에 대한 자재의 대체, 설비의 밀폐, 환기설비(전체환기, 국소배기장치) 개선 등 공학적 개선을 실시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사업장으로 인정
 -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을 제거한 실적이 있는 경우
 - 기타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유해요인으로부터 노출을 차단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유해요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작업환경개선 인정기준)
 -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부담을 완화한 실적이 있는 경우(예, 대차 등 중량물 운반방법 개선)
 - 기타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유해요인으로부터 노출을 완화한 실적이 있는 경우

C.2 만족도 등

< 100점 >

C.2.⊖ 만족도

C.2.⊖ K2B 시스템 활용

C.2.㉞

배점
100점

만족도, K2B 시스템활용

평가취지

기술지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위
탁사업장의 만족도
평가

※ 기준지표
B.3.1
(40점 → 50점)

C.2. 만족도 등	① 만족도, K2B 시스템 활용(배점: 100)	
평가기준	배점	평가결과
총점	100	
① 만족도	50	
② K2B 시스템 활용	50	

□ 평가 기준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90점 이상인 경우	☐ 1.0
만족도 조사결과 85점 이상~90점 미만인 경우	☐ 0.8
만족도 조사결과 80점 이상~85점 미만인 경우	☐ 0.6
만족도 조사결과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 0.4
만족도 조사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 0.2

○ 보건관리만족도 조사 인정 기준에 따라 평가

보건관리만족도 조사 인정 기준
① 조사된 모수가 30개 미만 또는 성공 조사건수가 30개 미만인 경우 - 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전체 평균점수를 초과한 경우 평균점수로 반영 - 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전체 평균점수 이하인 경우 평균점수에서 한단계 하향 평가 ② 위탁 실적은 있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공단 포함)에 진정서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최하점수(10점)로 평가

C.2.㉔

배점
100점

만족도, K2B 시스템활용

평가취지

기술지도 결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
한 전산입력 적정
성 평가

※ 기존지표
A.4.1.2
(-10점 → 50점)

C.2. 만족도 등	① 만족도, K2B 시스템 활용(배점: 100)	
평가기준	배점	평가결과
총점	100	
① 만족도	50	
② K2B 시스템 활용	50	

□ 평가 방법

- 평가대상기간 전체 위탁사업장을 대상으로 K2B 입력현황 기준으로 평가
 - * K2B 등록된 위탁 사업장의 담당업무구분이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인 계약 사업장을 기준
 - ※ K2B 내 담당업무구분: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컨설팅(300인 이상)으로 구성됨
- 평가대상기간 위탁사업장 현황을 제출받아 K2B 입력사업장과 비교 확인하여 누락 및 오류 확인
- 지연·누락 또는 오류가 없는 기술지도 보고서의 적정한 입력 건수를 산출하여 평가

□ 평가 기준

평가기준(배점50점)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부적정 건수가 없는 경우	☐	1.0
부적정 건수가 5건 이하인 경우	☐	0.8
부적정 건수가 10건 이하인 경우	☐	0.6
부적정 건수가 15건 이하인 경우	☐	0.4
부적정 건수가 15건 초과한 경우	☐	0.2

D. 가감점 지표 설명

05



D.1 가점제

< +100점 >

D.1.⊖ 보건점검 우수사례, 포상

D.1.⊖ 산업보건 관련 포상

D.1.㊸

가점
+50점

보건점검 우수사례, 포상

(1 / 3)

평가취지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
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공
유, 종합기술지원 여
부에
대해 가점 반영

D.1. 우수사례	① 보건점검 우수사례, 포상 (가점: +100점)		
평가기준		최고점	평가결과
① 보건점검 우수사례		+50점	
② 산업보건 관련 포상		+50점	

□ 평가 방법

- 보건관리 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는 기관별 우수사례 제출 및 수상실적과 평가대상기간 내 컨소시엄(협약) 구성 등 상호 교류실적 평가를 평가

□ 판단 기준

- 평가대상기간 내에 우수사례 제출 여부, 서류심사 결과 및 수상실적에 따라 평가
 - 대상 +30점, 최우수상 +25점, 우수상 +20점
 - ※ 발표대회에 “대상” 없이 “최우수상”이 가장 높은 상인 경우 가점 +30점 부여
 -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수상하지 못한 경우 +10점 부여
- 평가대상기간 내 컨소시엄(협약) 체결기관과의 교류실적 건수 반영
 - 컨소시엄(협약)기관 간 교류실적은 구두 교류가 아닌 상호 업무 협조를 증명하는 공문이나 협약서 작성 후 시행하며 시행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사진, 결과보고서 등)을 평가
 - 종합기술지원 계획 수립, 대상선정, 컨소시엄 체결, 지원내용, 지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적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장당 +10점 부여

D.1.⊖

가점
+50점

보건점검 우수사례, 포상

(2 / 3)

평가취지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
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공
유, 종합기술지원 여
부에
대해 가점 반영

D.1. 우수사례	① 보건점검 우수사례, 포상 (가점: +100점)	
평가기준	최고점	평가결과
① 보건점검 우수사례	+50점	
② 산업보건 관련 포상	+50점	

□ 종합기술지원으로 인정되는 사례

- ※ 예시1) 위탁 사업장내 취급화학물질 변동시 작업환경측정기관 연계, 건강이상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연계 등 컨소시엄 기관 간 교류실적 반영
- ※ 예시2) 환기장치의 구체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환기설비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협약 등) 구성 및 활동실적 반영
- ※ 예시3) 근로자 건강관리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협약 등)구성 및 활동실적 반영
- ※ 예시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개선, 작업특성을 고려한 신체 부위별 스트레칭 제시, 개인별 운동처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협약 등)구성 및 활동실적 반영
- ※ 예시5) 사업장의 직업병 사례 및 징후 발생 시 고용노동부 직업병 안심센터 또는 공단 일선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직업병 감시중재 체계를 활용하여 신고 및 대응한 사례
- ※ 예시6) 정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업종별 협회 등에서 추진하는 자체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D.1.㊸

가점
+50
점

보건점검 우수사례, 포상

(3 / 3)

평가취지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
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공
유, 종합기술지원 여
부에
대해 가점 반영

D.1. 우수사례

① 보건점검 우수사례, 포상 (가점: +100점)

평가기준	최고점	평가결과
① 보건점검 우수사례	+50점	
② 산업보건 관련 포상	+50점	

□ 평가 방법

○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표창장 제출로 평가

포상 훈격별 점수 기준

포상 내역	가점	포상수	총점
총 합	50점		
차관급 이상	30점		
차관급 미만	20점		

※ 차관급 이상: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도지사, 공단 이사장, 국회의원

※ 차관급 미만: 고용노동청지청장, 공단(교육원장, 인증원장, 기술원장, 본부장, 지사장),
지자체(시·도·군·구)

※ 기관 또는 수행인력이 두가지 이상 지정받은 경우 중복 인정 불가

※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에 따른 포상은 제외

D.2 감점제

< -100점 >

D.2.⊖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D.2.㊸

감점
-100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1 / 1)

평가취지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상질병 감축 역할,
책임의 명확화 및 부
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
고 법준수 분위기 확
산

D.2. 행정처분

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감점: -100점)

평가기준	최고점	평가결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100점	

□ 평가 방법

- 평가대상기간 내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도·감독 등에 의해 업무정지,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여부 평가

□ 판단 기준

- 업무정지 처분 개월 수 당 -30점 감점, 최대 -100점 감점
- 시정조치·경고 처분 건수 당 -15점 감점, 최대 -50점 감점

평가 기준

- 평가대상 기간 내 시정조치·경고처분에 따른 처분 확정일을 기준
- 지부(출장소) 운영 기관에 대한 평가: 본사 평가 점수 반영
- 처분 일을 기준으로 최종 처분기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
(예시) 업무정지 3.2개월 × -30점 = -96점
※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최초 업무정지 예정 기간으로 평가

감사합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